

Rationalization of University Library Management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 시리즈 3>

大學圖書館 經營의 合理化 方案에 관한 研究

李 應 善  
檀國大學圖書館課長

編輯者註：本稿는 1973年度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司  
書教育專攻(第2回) 碩士學位論文的 要約이다.

目 次

- 一. 序 論
- 二. 大學教育과 大學圖書館의 機能
- 三. 大學設置基準令과 大學圖書館
- 四.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理論의 背景
- 五. 國立大學圖書館機構組織의 實態考察과 問題點
- 六. 私立大學圖書館機構組織의 實態考察과 問題點
- 七.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改善方案
- 八. 結 論

一. 序 論

教育法 第1條에 「教育은 弘益의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完成하고 自主의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族國家發展에 奉仕하여 人類共榮의 理想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同法 第108條에는 「大學은 國家와 人類社會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그 廣汎하고 精緻한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여 指導의 人格을 陶冶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大學教育은 모든 國民의 人格完成과 自主의 生活能力과 公民으로서의 資質具有을 위한 教育理念의 實現을 具體化하기 위하여 그 應用方法을 教授研究하여 人類共榮의 理想實現을 위한 指導의 人格者의 培養을 目的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大學教育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몇가지의 補助施設中 가장 中心의인 施設을 든다면 그것은 다름아닌 大學圖書館일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에서는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圖書館의 機構組織이 機能發揮에 適合하도록 잘 짜여져야 한다고 主張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가 試圖하는 目的은 첫째 大學擴充奉仕 (University Extensive Service)<sup>1)</sup>에 直接寄與하고 大

學教育 發展을 促進시키는 大學圖書館의 當面 問題中 (職制確立과 定員問題, 職員의 資質向上問題, 參考業務의 擴充問題, 圖書館豫算의 增額問題 등) 機構組織에 관한 問題만을 다룬다. 둘째, 大學圖書館을 設置하는 데는 法的根椄가 있어야 하고, 圖書館組織에 관한 規程 즉 各部署의 組織 및 事務分掌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設置根椄와 組織規程의 有無가 어떠한지를 밝힌다. 셋째,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形態를 分析하여 問題點과 改善策을 提示하여 大學圖書館의 機能遂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리고 本研究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具體的인 研究內容은 첫째,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形態를 分析하여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改善을 불가피하게 하는 要因을 밝힌다. 둘째,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問題點을 提示하여 機構組織改善을 위한 共同研究課題의 資料를 삼는데 있다.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研究에 必要한 變數는 ①大學圖書館을 둘러싸고 있는 環境 ②圖書館組織의 內部構造 ③組織成員인 司書의 價值觀을 들 수 있으나 本論文에서는 現在의 大學圖書館이 本來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는 機構組織인가의 實態만을 研究하고자 한다.

機構組織의 實態를 考察하는 對象機關은 國立大學校 7個校와 學生數 4,500名 以上과 藏書數 15,000冊以上인 私立綜合大學 7個校로 計 14個大學에 대하여 調査對象으로 定하였다.

二. 大學教育과 大學圖書館의 機能

圖書館은 閱覽室을 가진 보잘 것 없는 冊倉庫로서가 아니라 教育의 한 動態의인 機構로 運營되어야 한다. <sup>2)</sup> 것은 常識化되어 있다. 大學圖書館은 學生들에게 知的 糧食을 提供하고 教授陣의 研究를 뒷받침하여야

1) 大學圖書館이 大學教育을 支援함은 勿論對社會奉仕를 看過할 수 없다. 즉 大學圖書館은 一般市民, 產業體 및 地域社會 公務員들에게도 그 奉仕를 提供해야 하는 것이다.  
2) M.A. 제르드著, 李炳禧譯, 大學圖書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2.

하며 모든 利用者로 하여금 圖書館의 모든 知的 文化的 饗宴의 參與하도록 하여야 한다.<sup>3)</sup>

圖書館 利用은 이러한 點에서 하나의 教育方法으로서 即 在來式 講義方式이나 討論方式을 超越한 새로운 教育方法으로서 그 意識을 갖는 것이다. 그러므로 全 圖書館 藏書는 教科課程의 모든 科目과 聯關되고 調査 및 研究面에서 司書는 大學教授의 一員으로 學生을 指導하고 教育하여야 하는 것이다. 即 學生들로 하여금 比較의 多量의 知識과 物的 乃至는 知的 技術을 習得하고 教科目이나 技術을 習得케 하는 過程에 있어서 繼續의이고 꾸준한 知的 探究에 對한 慣習을 發展시킴으로서 그 같은 成果를 거둘 수 있도록 指導한다는<sup>4)</sup> 大學 教育과 大學圖書館의 函數關係는 異意를 提起할 餘지가 없는 것이다.

막스 러너(Max Lerner)는 “The Revolutionary Frame of Our Time”이란 글에서 大學教育의 中心 目的은 價値觀의 革命이라고 하였는 바, 大學教育에 있어서 精神의 價値인 間接價値를 드높이는 삶의 哲學을 確立하지 못한다면 累卵의 危機의인 狀況이 끊임없이 連續되는 現代에 있어서 知性的 安定性(Intellectual Security)을 附與하는 올바른 文化變動의 方向잡이가 되어야 할 大學의 使命을 다 하였다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sup>5)</sup> 이러한 價値觀의 革命을 遂行하는 過程에 있어서 大學人은 그 革命의 道場을 大學圖書館으로 삼아야 할 것임은 分明해 지는 것이다.

大學圖書館의 機能은 大學社會가 가장 重要한 知的인 資料源으로서 그 大學의 教育과 研究目的을 成就하도록 돕는 하나의 學術을 위한 補助機關이다.

그러므로 大學圖書館의 機能으로서 ①大學內의 서어비스 機關이고 ②大學內의 情報센터(Information Center)이고 ③大學內의 調査 研究機關인 것이다.<sup>6)</sup> 이와 같이 大學圖書館은 大學教育에 直接 間接 參與 또는 奉仕하는 重要한 位置에 있는 바 이러한 奉仕機能을 제대로 發揮하기에는 무엇보다도 豫算이나 專門職 司書의 確保 등에 重要한 與件이 될 것이다.

大學圖書館의 共通의인 機能을 들면 다음과 같다.<sup>7)</sup> ①大學의 授業(教育) 計劃을 돕는다. ②授業進行에 사용되는 書籍, 定期刊行物, 文書, 音響資料 등을 蒐集, 整理하고 그 最善의 利用을 위해 奉仕한다. ③圖書館 資料를 利用하는데 必要로 하는 物的施設이나 條件을 準備 提供한다. ④學生들이 効果의으로 圖書館施設 및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指導해 준다. ⑤學生들이 大學을 卒業한 後에도 그들의 知的發展을 圖書館을 利用하도록 自習의 習性을 育成함을 돕는다. ⑥教材以外의 趣味를 위한 讀書를 獎勵한다. ⑦教授陣이나 大學院生들의 研究活動에 隨伴하는 對圖書館 要求를 最大限으로

充足시킨다. ⑧地域社會, 地方 및 其他의 圖書館들과 相互協助한다.

上記의 機能을 圓滑히 發揮하자면 여러 가지 問題가 解決되어야 한다. 即 機構組織의 問題, 司書의 質的向上問題, 參考業務의 擴充問題, 圖書館豫算의 增額問題<sup>8)</sup> 등의 諸問題가 解決되어야 機能을 제대로 發揮할 수가 있을 것이다.

### 三. 大學設置基準令과 大學圖書館

大學圖書館에 對해 法的으로 어떤 規制와 保障을 받고 있는지를 考察하면 國立大學인 서울大學校를 除外한 國立大學校圖書館의 機構組織에 關한 規程은 없고 다만 施設과 資料에 關한 規程만 있다. 大學圖書館에 關한 關係法을 들면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4項 및 第11條와 圖書館法 第3條, 第6條, 第4項, 第25條 및 第26條와 同法施行令 第2條 第2項 그리고 第4條 등에 成文化되어 있다.

이는 大學設置基準令에서 大學教育의 學究的 研究調査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中樞의 機關으로서 大學圖書館이 1955년에 圖書館을 設置하지 않은 一部 大學에 圖書館을 設置해야 한다는 規制였으며 1963年 10月 28日公布된 本 圖書館法은 늦게나마 圖書館 全般에 關한 規程이 나오게 된 것이다.

圖書館에 賦課된 使命을 成功的으로 完遂하기 위하여는 組織된 人間의 努力이 本質的인 것이며 이의 必須要件은 圖書館 職員의 構成이며 原動力이 되는 大學圖書館司書의 充用實態를 考察하면 다음과 같다.

#### 1. 國立大學校 司書의 充用實態

圖書館法 第26條에 「學校圖書館의 職務를 擔當할 職員으로서 實業高等學校, 初級大學, 大學(校), 教育大學, 師範大學에는 司書職員을 두어야 하며…」로 되어 있어 大學圖書館에 司書職員을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으며, 圖書館法施行令 第4條에 「法條6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의 資格은 正司書로 한다」로 司書職員의 資格을 規定하였다. 그리고 公務員試驗施行規定中에 「特殊職 公開競爭採用試驗應試資格表」에 3級은 正司書 資格證所持者, 4級과 5級은 正司書 및 準司書 資格證所持者로 應試資格을 주고 있으며 但 5級에 關해서는

3) 上掲書, p. 30.

4) 上掲書, p. 31.

5) 朴大善, “大學의 使命” 大學의 理解(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69) p. 44.

6) 推名六郎, 圖書館學概論(東京:學藝圖書株式會社, 1960), 133面.

7) A.L.A. Personnel Organization and Procedure: : a Manual Suggested for Use in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ies, Chicago, 1952, p. 3.

8) 韓國圖書館協會編, 圖書館實務便覽, (서울, 1967), 165面.

規程이 없다.

이렇게 司書職의 資格에 對하여 正司書와 準司書로 區分하고 公務員任用令에 의해 採用試驗에 合格하여야 司書가 될 수 있다. <表 省略><sup>9)</sup>에 나타난 바와 같이 國立大學 7個校의 大學圖書館 職員數는 84名(24%)으로 學生 1,164名에 專門職員이 1名 끝이다.

#### 2. 私立大學 司書의 充用實態

公務員任用令의 抵觸을 받지 않는 私立大學 司書職員의 任免은 學校自體의 人事政策에 달려 있다. 즉, 有資格司書를 採用하던 一般職員으로 하여금 司書의 業務를 擔當하게 하던 그저 몇명이 圖書館에 있으면 圖書館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表 省略><sup>9)</sup>에 나타난 바와 같이 私立大學 7個校의 大學圖書館 職員數는 229名이다. 이 중 專門職員數는 103名으로 全職員에 約 23%가 되며 學生 532名에 專門職員은 1名 끝이다.

### 四. 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의 理論的 背景

紙面 關係로 省略함. (參照: “국회도서관보 vol. 11, no. 6 (74.7·8) pp. 67~69)

### 五. 國立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實態考察과 問題點

1.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 機構組織의 實態考察은 紙面關係로 省略하고 問題點만 들면 다음과 같다.

#### 가. 大學設置令上의 問題點

(1) 서울大學校設置令 第20條(圖書館) 機構에 關한 條項에 課에 關한 規定만 있고 係에 關한 規定은 없다. 이것은 課長 한사람이 여러 職員을 指揮監督하게 됨으로 統率의 範圍(Span of control)라는 組織原理와는 差異가 있는 組織이라 할 수 있다.

(2) 同設置令 第20條에 事務分掌은 課에 事務만 規定하였지 係業務에 關한 規定은 없다. 그러나 實地는 係가 있어 業務를 적당히 나누어 遂行하고 있으므로 組織의 專門化의 原理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3) 同設置令 第20條 第1項에 「司書課, 閱覽課에 課長은 書記官으로 補한다」고 規定되어 課長 밑에 係長인 (3級乙)이 있어야 되는데 係에 關한 規程이 없기 때문에 係長인 司書官은 없고, 司書(4級甲) 以下の 職級만 있게 되었으니, 司書의 昇進길은 永還히 막혀 있으며 責任과 權限委讓의 原則이란 組織의 原則에 比較하면 거리가 멀어 責任限界와 業務限界가 明確하지 않다.

(4) 同設置令 第20條에 課에 關한 規定만 있는데 附屬圖書館의 現在機構에는 係가 10個係나 있다. 이것은 課의 設置根據가 있는 正式的組織(Formal organization)이나 現在 奉仕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10個係는 當圖書館內에서만 알고 있는 設置根據가 없는 非正式的組織(Informal organization)으로 볼 수 있는데 이 非正

式的 組織의 業務上 責任과 權限이 問題點이라 하겠다.

#### 나. 大學圖書館 館長職에 關한 問題點

同設置令 第10條 第1項의 「附屬施設의 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 兼補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教授는 研究에 많은 時間을 割愛해야 한다. 그런데 館長은 業務의 把握이나 職員에 對한 指揮監督에도 많은 精力을 傾注하여야 하고, 圖書館에 對한 專門知識도 있어야 하는데 教授職만이 館長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司書의 立場으로 볼 때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다.

#### 다. 圖書館 專門職員의 奉仕能力의 限界에 關한 問題點

奉仕對象人員은 約 18,000名(敎·職員포함)이며, 藏書는 647,967冊인데 機構는 但 3個課, 人員은 專門職員이 33名, 非專門職員이 44名으로 計 77名이다. 그러므로 專門職員 1人當 奉仕人員은 約 600名, 藏書는 專門職員 1人當 約 19,635冊이나 된다. 이러한 機構와 人員으로 大學圖書館의 機構를 제대로 發揮할 수 있을 가 問題이다.

#### 2. 其他 國立大學 附屬圖書館

各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實態考察은 紙面 關係上 省略하고 機構組織의 問題點만을 들 수 있겠다.

#### 가. 國立學校設置令上의 問題點

(1) 國立學校設置令 第11條(下部組織) 第1項에 「... 研究施設에 處, 局 또는 課를 둘 수 있다」고 規定하여 課長 한사람이 指揮監督하게 되므로 統率의 範圍(Span of control)라는 組織原理와는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2) 同設置令 第11條 第1項에 「課를 둘 수 있다」는 規定이 있는데 이 課에 關한 事務分掌規定은 없어 무슨 業務를 해야 하는지 또 課만 둘 수 있는지 係에 關한 規程은 없어 課長과 課員만이 있게 되어 組織의 基本形態와는 거리가 먼 組織이라 하겠다.

(3) 同設置令 第11條 第1項에 課에 關한 規程만이 있고 係에 關한 規程은 없는데 現在 各國立大學 圖書館機構에는 係에 該當하는 部署가 各 大學圖書館마다 여러개 있다. 그러므로 課는 設置根據가 있는 正式的 組織이나 現在 奉仕業務를 遂行하고 있는 係(室)에 該當되는 部署는 圖書館自體에서 便宜上 만든 것으로 非正式的 組織인데 이 非正式的 組織이 正式的 組織의 機能을 遂行하고 있는 것이 問題點이라 하겠다.

#### 나. 圖書館規程에 關한 問題點

圖書館規程은 圖書館의 運營, 資料의 利用 및 管理에 關한 事項을 規定하는 것인데 이 規程이 없으므로 業務遂行에 있어서 基準과 方針이 없어 紀律이 서지

9) 韓國圖書館協會編, 韓國圖書館統計, 1973.

10) 上揭書.

않으며 組織構成員의 活動가 問題點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立大學 圖書館으로서는 서울대와 忠北大學 圖書館만이 圖書館規程이 있고 其他 國立大學圖書館은 아직 없는 實情이다.

라. 圖書館機構組織上的 問題點

(1) 서울大學校 附屬圖書館을 除外한 6個 國立大學 附屬圖書館의 機構組織은 圖書館設置의 法的根擔가 微弱하여 正式的組織보다 各大學의 實情과 그 圖書館의 立場에서 便宜上 만들어진 非正式的組織이 大部分이다. 이리하여 大學教育 目標達成에 補助機關으로서 合理的인 機構組織이라 할 수 없는 點이 問題라 하겠다.

(2) 各 大學校圖書館의 機構組織에 있어서 機能을 充分히 發揮할 수 있는 課, 係 등의 職制가 合理的으로 組織되어 있지 않은 點이 問題라 하겠다.

(3) 職制의 確立과 더불어 各課, 各係의 事務分掌을 明白히 認定하여 責任限界的으로 業務를 遂行할 수 있는 體制의 缺如가 問題點이라 하겠다.

(4) 國立大學 圖書館에 司書長이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國立學校 設置令에도 없어 校內 他部署(課)와 對等한 地位가 아닌 것 같으며 다만 圖書館의 立場에서 便宜上 만들어진 것으로 그 格에 差異가 있어 地位를 認定받을 수 없는 現實인 것이다.

(5) 大學圖書館 館長職에 關한 問題點

國立大學設置令 第6條, 第1項에 「研究施設에 各各長을 둔다」고 規定하였고, 同條 第2項에 「...研究施設의 長은 教授 또는 副教授로 補한다」고 規定하고 있으므로 館長은 教授職만이 하게 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를 보면 國立學校設置法施行規則抄(最終改正 1969年 6月 11日 文部省令 第18號) 第12條에 「國立大學의 附屬圖書館에 館長을 두고, 그 大學의 教授로 補한다. 但 必要한 경우에는 事務職員으로서도 補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고 또 分館長의 경우도 「教授 또는 助教授로 補하고 但 必要한 경우에는 事務職員으로도 補할 수 있다」고 規定하였다.<sup>11)</sup>

이와같이 教授 또는 專門職員이 館長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우리와 같이 教授만이 館長職을 獨占한다는 制度는 問題點이 있다고 하겠다.

(6) 圖書館專門職員의 待遇에 關한 問題點

職制가 確立되어 있지 않으니 定員도 없고 昇進한 機會도 없을 뿐더러 報酬도 적어 아무리 忍耐力이 強한 司書라 하더라도 職業에 矜持를 갖기가 어려운 士氣도 큰 問題點으로 들 수 있다.

(7) 圖書館專門職員의 奉仕能力의 限界에 關한 問題點

서울大學校를 除外한 6個國立大學의 學生數는 80,213名이며, 藏書는 484,257冊 圖書館의 職員은 專門職員

이 51名, 非專門職員 78名으로 129計名이다. 專門職員 1人當 奉仕人員은 約 1,573名이고, 藏書는 約 9,495冊이나 된다. 이러한 甚大한 奉仕對象과 藏書管理에 現在와 같은 機構의 人員으로서는 圖書館의 職能을 제대로 發揮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六. 私立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問題點

1. 大學設置基準令上的 問題點

大學設置基準令 第8條 第4項에 「...圖書館設置를 하여야 한다」 同設置令 第11條에 「圖書館의 設備과 圖書의 基準」에 關해서 規定하였다. 이로 因해 設備과 藏書는 그 基準에 어느 程度 到達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設備과 藏書를 管理할 機構와 司書의 定員에 關한 規程이 없어 施設과 資料量에 比하여 圖書館의 機構는 奉仕體制의 機構라기 보다 施設과 資料를 지키는 程度의 機構와 人員으로서 奉仕를 잘 할 수 있는지 問題라 하겠다.

2. 圖書館規程上的 問題點

各 大學의 學則에 研究施設을 둔다고 規定하였고 研究施設中 첫째가 附屬圖書館으로 되고 있고 研究施設 設置條項 第2項에 「研究施設에 對한 必要한 規程은 總長이 따로 定한다」고 規定하여 이 條項에 의해서 圖書館規程을 制定한 大學 5個大學에 지나지 않으며, 또 規程을 制定하였다 하더라도 機構組織에 關한 條項은 거의 없고 施設과 資料管理에 關한 條項이 大部分이다.

3. 圖書館機構組織上的 問題點

가. 國·私立을 莫論하고 圖書館의 機能과 業務의 重要性 및 量, 質은 他部署에 比하여 크다는 것은 自他가 公認하면서도 積極的인 育成策을 세우지 않아 合理的인 機構組織과 人的確保 및 豫算確保가 잘 되지 않아 機能遂行에 莫大한 支障을 가져오고 있음은 司書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大學教育에 있어서 圖書館이 中樞의 補助機關으로 그 機能을 充實히 遂行할 수 있는 職制의 確立이 早速히 要望되는 것이다.

機構組織은 어디까지나 固定되어서는 안되고 그 環境에 適應할 수 있도록 經營者는 銳敏한 經營姿勢가 重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現在의 各大學圖書館의 機構組織이 大學教育目的에 適應할 수 있느냐를 생각할 때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나. 大學圖書館의 館長職에 關한 問題點

國·私立을 莫論하고 館長을 教授가 兼해야 現程度의 機能이라도 發揮할 수 있는지 疑問點이 많다. 教授는 圖書館內容에 對해서는 司書보다 많이 안다고 할 수 있겠지만 圖書整理의 技術的인 業務는 잘 모를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教授만이 館長職을 獨占하는 現制度는 矛盾點이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校長, 校監은 資格證과 敎師를 歷任하였어야 될 수가 있으며, 또 病院院長도 醫師라야 될 수 있다. 그런데 大學圖書館의 館長만은 司書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다. 專門職인 司書의 待遇에 관한 問題點

現在의 大學司書의 待遇로서는 勸獎을 할 수가 없는 實情이다. 왜냐하면 報酬도 問題는 勿論 職場에 魅力이 적은 原因은 司書로서 最高로 昇進할 수 있는 職位가 課長으로 그 職位도 많아야 세자리 程度이고 現在 停年退職은 平司書와 거의 같이 할 처지이기 때문에 다른 方法을 摸索하지 않고는 待遇問題가 解決될 수 없다고 보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라. 專門職員의 奉仕能力의 限界에 관한 問題點

7個 私立大學의 學生總數는 54,734名이며, 藏書數는 總 1,595,500卷인데 比하여 機構는 1個課乃至 3個課程度이고, 職員은 司書가 103名, 非司書가 126名으로 司書 1人當 奉仕人員이 約 534名이며, 藏書는 1人當 約 15,500卷이나 된다. 現在 우리 나라 公務員 1人當 國民 75名인데 比하여 너무나 엄청난 奉仕人員과 藏書管理인 것이다. 이러한 實情으로도 圓滑한 奉仕가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가 問題點인 것이다.

七. 大學圖書館 機構組織의 改善方案

1. 大學設置令의 改正方案

大學圖書館에 관한 各種法規를 統合하여 大學圖書館法을 制定하는 것이 最善의 方法이겠으나 現在의 우리 實情으로는 매우 어려울듯 하여 次善의 方法으로 各設置令을 改正하는 것이 急先務라 하겠다. 즉, 各設置令에 綜合大學圖書館의 機構는 最少限 館長, 副館長, 課(4個課以上) 係(12個以上)에 關해 規定되어야 하고 또 各部署의 責任者의 職級과 部署의 事務分掌을 明文化해서 研究調查機關으로서의 諸般活動에 法的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各設置令의 改正(案)은 다음과 같다.

1) 서울大學校設置令中改正(案)

第10條 第2項 「…附屬施設의 長은 敎授 또는 副敎授 및 專門職司書로 補하고 副館長은 專門職司書로 補한다」로 改正. 第20條(圖書館) 第1項 「附屬圖書館에 庶務課, 司書課, 閱覽課와 調查課를 두되, 庶務課長은 行政事務官으로, 司書課長과 閱覽課長은 書記官으로 補하고 調查課長과 敎授, 副敎授 또는 助敎授로 兼補한다」를 「…課를 두되, 課에는 係를 두고, 課長은 正司書資格證을 所持한 司書官으로 補한다」로 改正.

2) 國立學校設置令中改正(案)

第10條(學長等) 第2項 「…研究施設의 長은 敎授 또는 副敎授로 補한다」를 「但 附屬圖書館은 館長과 副館長을 두고, 館長은 敎授職 또는 專門司書로 補하고, 副館長은 專門司書로 補한다」로 改正. 第11條(下部組織) 第1項 「研究施設에 處·局 또는 課…」를 「但 附屬圖書館은 課을 4個課 以上두고 課에 係를 두되 한課에 3係以上 두어야 한다」로 改正.

第2項 「前項의 處·局 또는 課에 各各長을 둔다」를 「… 두되 附屬圖書館의 課長은 正司書資格證을 所持한 書記官으로 補하고 係長은 正司書資格證을 所持한 司書官으로 補한다」로 改正

3) 大學設置基準令中改正(案)

第8條第4項 「校舍에는 …圖書館…設置를 하여야 한다」를 「…圖書館을 設置하고, 館長과 副館長을 둔다」로 改正

第4項 新設 「機構는 課를 4個課 以上으로 하여야 한다」

第5項 新設 「課에는 係를 두되, 一課에 3個係 以上 두어야 한다」

2. 圖書館規程의 制定과 方向은 紙面 關係上 省略함. (參照 國회도서관보 vol. 11, no. 6 ('74.7.8) pp. 74 ~75)

3. 圖書館機構組織에 관한 改編方案

1) 機構組織의 改編方案

機構를 編成하는데는 組織計劃이 있어야 하는데 그 計劃은 다음과 같은 節次를 밟아 樹立하여야 한다<sup>12)</sup>

①遂行할 또는 遂行하여야할 特定業務를 識別하여 이를 廣範한 機能으로 모으고, ②그 機能을 同質의 單位나 部署로 配定하여, ③各 單位의 責任과 義務를 分明하게 하고 ④各 單位나 部署間에 區別해야할 權限과 關係의 系線을 밝혀냄으로써 計劃을 이룩할 수 있다.

그리하여 綜合大學圖書館으로 最適合한 機構組織의 案을 圖示하면 다음<表>와 같다.

機構(案)을 說明하면 副官長制度를 採擇하였고, 庶務課는 間接業務로 지금과 다를 바 없으며, 司書課는 整理業務에 있어서 東書와 洋書를 分離하여 整理하고, 資料運營課는 資料의 利用에 關한 業務를 管轄하며, 資料調查課는 各學問別로 教材研究, 文獻調查, 書誌調查, 索引 등의 業務를 하며, 定刊課는 定刊書의 重要性和 活用性이 높아지고 있어 國內과 定刊書의 蒐集, 閱覽, 保管을 集中의으로 함이 大學圖書館으로서 바람직 하겠다.

2) 館長職에 관한 改善方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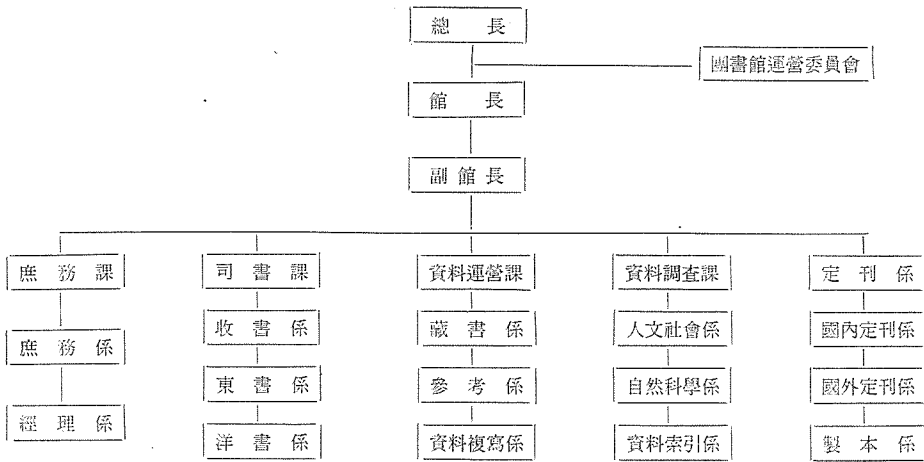
現行 各設置令에는 敎授外는 館長이 될 수 없게 된 것

11) 社團法人 日本圖書館協會編, <前掲書> p. 41.

12) 李炳穆 譯 <前掲書> pp.46~47.

<表>

綜合大學圖書館機構(案)



을 司書도 館長이 될 수 있다는 門戶가 開放되어야만 司書에게도 希望이 있고 士氣도 높아지며 優秀한 司書도 많아질 것이다.

3) 副館長制度의 新設方案

短點을 되도록 적지하기 위하여 專門職인 司書로 充員하는 副館長制度가 있어야 學術的인 面과 實質的인 面이 서로 折衷되고 融合되면 理想的인 圖書館運營이 될 것으로 確信하여 副館長職의 新設을 提案하는 바이다.

4) 專門職員의 待遇에 關한 改善方案

教授와 同等한 待遇란 司書에게 教授職의 職位(rank)와 職名을 附與하여 教授陣과 對等한 俸給과 特典을 주고 教員 및 研究職員의 構成員임을 公式的으로 認定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司書의 職位는 教授職位를 附與하게 되면 同僚의 位置에서 意思疏通을 하고 協力할 수 있기 때문에 大學의 目標達成에 積極的으로 參與하리라 豫想된다.

八. 結 論

大學圖書館의 機能은 量的 質的으로 擴大變化하여 왔는데 反하여 機構組織은 舊態依然히 踏步狀態에 있

어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고 있음을 考察하였다. 有名한 「과아고우」의 말대로 圖書館 없이는 大學 教育을 推進시킬 수도 없는 事實인데 오늘의 우리 大學 圖書館들은 古書(원책)의 保管所가 되어서도 안되고 베스트 셀러의 陳列場이 되어서도 안된다. 오로지 學問 研究에 必須的인 廣範圍한 學術的 價値가 있는 古典 및 新刊圖書의 確保, 迅速正確한 情報의 提供奉仕와 施設의 充實, 專門職의 確保, 長短期의 企劃 등 모든 部 面に 있어서 大學의 圖書館은 完璧하여야 한다. 그런데 一般的인 認識이 圖書館은 消費機關이고 非生産機關이란 觀念으로 더욱 發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一般的인 觀念은 形態있는 生産과 收入만을 생각한 것이지 間接的으로 圖書館을 通하여 얻는 利益과 生産은 생각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側面으로 보면 지금과 같이 放心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일 큰 關心은 圖書館에 두어야 하고 圖書館의 發展策을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本論文은 大學의 心臟인 圖書館이 살아 있어야 하고 活動할 수 있도록 하자면 무엇보다 圖書館의 機構組織이 適應組織으로서 動態的인 機構組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 會費와 出版物 代金を 조속히 納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圖書館 發展을 위하여 努力하시는 會員 여러 분께 感謝를 드립니다.

會員 여러 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會員 여러 분께서 納付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は 協會의 運營은 勿論 圖書館 事業發展에 原動力이 되는 基本資金입니다.

여러 圖書館이 財政的으로 어려운 事情이 있을 것으로 아오나, 協會의 貧弱한 財政事情을 깊이 理解하시와 그간 未納하신 會費와 出版物代金 및 75年度 會費를 納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付託드립니다.